

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134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박찬선의원외3	제안(출)년월일	2000. 1. 31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이종환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제정의 근거규정 변경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규정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(1999.12.31 대통령령 16672호)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조례 목적중 “제46조제1항”을 “제46조의2 제1항”으로하고, “실비변상”을 “실비보상”으로 함.(안 제1조)
- (2)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 “공인회계사”를 “공인회계사·세무사등”으로 함.(안 제3조)

2. 검토결과

-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(1999. 8.31, 법률 제6002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고 동법시행령이 개정(1999.12.31)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 :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시행령 “제46조 제1항”을 “제46조의2 제1항”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, “실비변상”을 “실비보상”으로 수정하며,
- 안 제3조제2항1 :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 “공인회계사”를 “공인회계사 · 세무사등”으로 개정하는 것임.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. 관계법규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

< 관 계 법 령 >

【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】

제46조(결산승인)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'99. 12. 31>

【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】

제46조의2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하되, 그 경우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'94. 7. 6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'99. 12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